|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무원《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  국무원령 제605호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은 2011년 9월 21일 국무원 제17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를 공포하는 바, 2011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총리 원자바오(温家宝)  2011년 9월 30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제1조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관할 해역에서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광산품을 채굴하거나 소금을 생산(이하, ‘과세제품의 채굴 또는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자원세의 납세인으로서, 본 조례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제2조 개정: “자원세의 세목(税目), 세율은 본 조례의 첨부《자원세 세목세율표》및 재정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세목, 세율의 일부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3. 제3조 개정: “납세인의 구체적인 적용 세율은 본 조례에 첨부된 《자원세 세목세율표》에서 규정한 세율 범위 내에서 납세인의 채굴 또는 생산하는 과세제품의 자원등급, 채굴조건 등의 상황에 근거하여 재정부와 국무원의 유관부문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재정부가 명칭을 열거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기타 비금속 원석과 비철금속 원석은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의거하여 확정하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비안한다.”  4. 제5조, 제6조를 통합하여 제4조로 개정: “자원세의 납부세액은 종가정률(从价定率) 또는 종량정액(从量定额)의 방법에 따라 각각 과세제품의 판매액에 납세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비례 세율을 곱하거나, 과세제품 판매량에 납세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정액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5. 제4조를 제5조로 개정: “납세인이 상이한 세목의 과세제품을 채굴하거나 생산할 경우, 상이한 세목의 과세제품 판매액 또는 판매량을 각각 구분하여 결산해야 한다. 상이한 세목의 과세제품 판매액 또는 판매량을 각각 구분하여 결산하지 않거나 정확히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6. 신규조항 추가 제6조로 제정: “납세인이 채굴 또는 생산한 과세제품을 지속적으로 과세제품 생산에 자가사용하는 경우,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기타 방면에 자가사용하는 경우, 매출로 간주하여 본 조례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한다.”  7. 제8조 중 “과세수량”을 “판매액 또는 판매수량”으로 수정한다.  8. 제15조 개정: “본 조례 실시방법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9. 첨부한《자원세 세목세액 범위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원세 세목세율표**   |  |  |  | | --- | --- | --- | | **세목** | | **세율** | | 1. 원유 | | 판매액의 5%-10% | | 2. 천연가스 | | 판매액의 5%-10% | | 3. 석탄 | 코크스 | 톤당8-20위안 | | 기타 석탄 | 톤당 0.3-5위안 | | 4. 기타 비금속 원석 | 보통 비금속 원석 | 톤당 또는1㎥당0.5-20위안 | | 귀중 비금속 원석 | 1㎏또는1캐럿당0.5-20위안 | | 5. 흑색금속 원석 | | 톤당 2-30위안 | | 6. 비철금속 원석 | 희토류 광석 | 톤당 0.4-60위안 | | 기타 비철금속 원석 | 톤당 0.4-30위안 | | 7. 소금 | 고체 소금 | 톤당 10-60위안 | | 액체 소금 | 톤당 2-10위안 |   본 결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는 본 결정에 의거하여 상응하도록 개정하고, 주문의 순서를 상응하게 조정한 후 재차 공포한다. |  | **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的决定**  国务院令第605号    　　《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的决定》已经2011年9月21日国务院第173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11月1日起施行。  　　　　　　　　　　　　　　　　　　总理 　温家宝　　　　　　　　　　　　　　　　　　　　　二○一一年九月三十日    　　国务院决定对《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作如下修改：  　 一、第一条修改为：“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及管辖海域开采本条例规定的矿产品或者生产盐（以下称开采或者生产应税产品）的单位和个人，为资源税的纳税人，应当依照本条例缴纳资源税。”  　 二、第二条修改为：“资源税的税目、税率，依照本条例所附《资源税税目税率表》及财政部的有关规定执行。  　 “税目、税率的部分调整，由国务院决定。”  　 三、第三条修改为：“纳税人具体适用的税率，在本条例所附《资源税税目税率表》规定的税率幅度内，根据纳税人所开采或者生产应税产品的资源品位、开采条件等情况，由财政部商国务院有关部门确定；财政部未列举名称且未确定具体适用税率的其他非金属矿原矿和有色金属矿原矿，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实际情况确定，报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备案。”  四、第五条、第六条合并作为第四条，修改为：“资源税的应纳税额，按照从价定率或者从量定额的办法，分别以应税产品的销售额乘以纳税人具体适用的比例税率或者以应税产品的销售数量乘以纳税人具体适用的定额税率计算。”  　 五、第四条作为第五条，修改为：“纳税人开采或者生产不同税目应税产品的，应当分别核算不同税目应税产品的销售额或者销售数量；未分别核算或者不能准确提供不同税目应税产品的销售额或者销售数量的，从高适用税率。”  　 六、增加一条，作为第六条：“纳税人开采或者生产应税产品，自用于连续生产应税产品的，不缴纳资源税；自用于其他方面的，视同销售，依照本条例缴纳资源税。”  　 七、第八条中的“课税数量”修改为“销售额或者销售数量”。  　 八、第十五条修改为：“本条例实施办法由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制定。”  　 九、将所附的《资源税税目税额幅度表》修改为：    **资源税税目税率表**   |  |  |  | | --- | --- | --- | | **税　目** | | **税　率** | | 一、原油 | | 销售额的5%-10% | | 二、天然气 | | 销售额的5%-10% | | 三、煤炭 | 焦煤 | 每吨8-20元 | | 其他煤炭 | 每吨0.3-5元 | | 四、其他非金属矿原矿 | 普通非金属矿原矿 | 每吨或者每立方米0.5-20元 | | 贵重非金属矿原矿 | 每千克或者每克拉0.5-20元 | | 五、黑色金属矿原矿 | | 每吨2-30元 | | 六、有色金属矿原矿 | 稀土矿 | 每吨0.4-60元 | | 其他有色金属矿原矿 | 每吨0.4-30元 | | 七、盐 | 固体盐 | 每吨10-60元 | | 液体盐 | 每吨2-10元 |   　 本决定自2011年11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根据本决定作相应的修改并对条文顺序作相应调整，重新公布。 |